화성 동탄 롯데캐슬 파티오 타운하우스 입주자 모집공고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은 안심하고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 화성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2003.06.0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분도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가능)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02.09.03)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07. 9.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주택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국토해양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시행 지시(2006.11.27)에 따라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www.lotteapt.net)를 통해 사전 관람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 – 10718 (2008. 07. 0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604-0B/L (예정지번 : 반송동 201-0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 ~ 지상 3층, 단독주택 3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 금액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동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동별	공급동수	총분양금액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화성시	수도권			동별 공급면적			동별 공급면적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3회	4회	
					전용면적	지하층	소계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계약 시	2008.10.22	2009.01.22	2009.04.22	2009.07.22	입주 시
민영주택	22003-01	22004-01	2008000616 (01)	304.54	296.72	7.82	304.54	39.52	129.68	473.74	348.01	101	1	1,700,280	886,698	813,582	1,700,280	170,028	170,028	170,028	170,028	170,028	850,140
											335.51	102	1	1,760,390	918,045	842,345	1,760,390	176,039	176,039	176,039	176,039	176,039	880,195
											335.51	103	1	1,786,150	931,479	854,671	1,786,150	178,615	178,615	178,615	178,615	178,615	893,075
											335.51	104	1	1,786,150	931,479	854,671	1,786,150	178,615	178,615	178,615	178,615	178,615	893,075
											335.51	105	1	1,751,800	913,566	838,234	1,751,800	175,180	175,180	175,180	175,180	175,180	875,900
											364.78	106	1	1,717,450	895,652	821,798	1,717,450	171,745	171,745	171,745	171,745	171,745	858,725
	22003-02	22004-02	2008000616 (02)	316.49	296.68	19.81	316.49	39.51	90.36	446.36	380.18	107	1	1,641,090	855,830	785,260	1,641,090	164,109	164,109	164,109	164,109	164,109	820,545
	22003-03	22004-03	2008000616 (03)	272.34	262.06	10.28	272.34	34.90	76.81	384.05	318.90	108	1	1,501,890	783,237	718,653	1,501,890	150,189	150,189	150,189	150,189	150,189	750,945
											314.32	109	1	1,501,890	783,237	718,653	1,501,890	150,189	150,189	150,189	150,189	150,189	750,945
											314.32	110	1	1,494,420	779,342	715,078	1,494,420	149,442	149,442	149,442	149,442	149,442	747,210
											336.04	111	1	1,449,590	755,963	693,627	1,449,590	144,959	144,959	144,959	144,959	144,959	724,795
	22003-04	22004-04	2008000616 (04)	304.60	293.68	10.92	304.60	39.10	85.66	429.36	380.37	113	1	1,607,750	838,443	769,307	1,607,750	160,775	160,775	160,775	160,775	160,775	803,875
											350.91	114	1	1,615,790	842,636	773,154	1,615,790	161,579	161,579	161,579	161,579	161,579	807,895
											350.91	115	1	1,623,830	846,830	777,000	1,623,830	162,383	162,383	162,383	162,383	162,383	811,915
											350.91	116	1	1,623,830	846,830	777,000	1,623,830	162,383	162,383	162,383	162,383	162,383	811,915
											350.91	117	1	1,623,830	846,830	777,000	1,623,830	162,383	162,383	162,383	162,383	162,383	811,915
											372.89	120	1	1,591,000	829,709	761,291	1,591,000	159,100	159,100	159,100	159,100	159,100	795,500
											365.24	121	1	1,598,960	833,859	765,101	1,598,960	159,896	159,896	159,896	159,896	159,896	799,480
											361.34	122	1	1,606,950	838,026	768,924	1,606,950	160,695	160,695	160,695	160,695	160,695	803,475
	22003-05	22004-05	2008000616 (05)	303.48	296.35	7.13	303.48	39.47	72.55	415.50	373.27	118	1	1,571,670	819,628	752,042	1,571,670	157,167	157,167	157,167	157,167	157,167	785,835
											348.56	119	1	1,504,070	784,374	719,696	1,504,070	150,407	150,407	150,407	150,407	150,407	752,035
	22003-06	22004-06	2008000616 (06)	316.58	293.68	22.90	316.58	39.10	125.12	480.80	371.95	129	1	1,699,860	886,479	813,381	1,699,860	169,986	169,986	169,986	169,986	169,986	849,930
											396.55	130	1	1,607,750	838,443	769,307	1,607,750	160,775	160,775	160,775	160,775	160,775	803,875
	22003-07	22004-07	2008000616 (07)	327.83	309.63	18.2	327.83	41.23	120.13	489.19	355.97	123	1	1,686,240	879,376	806,864	1,686,240	168,624	168,624	168,624	168,624	168,624	843,120
											356.32	124	1	1,686,240	879,376	806,864	1,686,240	168,624	168,624	168,624	168,624	168,624	843,120
											358.23	125	1	1,748,040	911,604	836,436	1,748,040	174,804	174,804	174,804	174,804	174,804	874,020
											361.69	126	1	1,748,040	911,604	836,436	1,748,040	174,804	174,804	174,804	174,804	174,804	874,020
											366.71	127	1	1,756,780	916,162	840,618	1,756,780	175,678	175,678	175,678	175,678	175,678	878,390
											390.55	128	1	1,642,090	856,351	785,739	1,642,090	164,209	164,209	164,209	164,209	164,209	821,045
	22003-08	22004-08	2008000616 (08)	285.43	285.43	-	285.43	38.01	92.57	416.01	366.84	131	1	1,643,970	857,333	786,637	1,643,970	164,397	164,397	164,397	164,397	164,397	821,985
											348.87	132	1	1,643,970	857,333	786,637	1,643,970	164,397	164,397	164,397	164,397	164,397	821,985
											378.54	133	1	1,643,970	857,333	786,637	1,643,970	164,397	164,397	164,397	164,397	164,397	821,985
	22003-09	22004-09	2008000616 (09)	304.10	304.10	-	304.10	40.49	87.43	432.02	416.99	134	1	1,760,260	917,978	842,282	1,760,260	176,026	176,026	176,026	176,026	176,026	880,130
	22003-10	22004-10	2008000616 (10)	256.59	256.59	-	256.59	34.18	88.29	379.06	349.89	112	1	1,404,700	732,553	672,147	1,404,700	140,470	140,470	140,470	140,470	140,470	702,35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각 동별 분양금액이며, 각 동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관계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 계약품목(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동별 계약면적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동별 대지지분은 별도의 관리규약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화성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06.07)되어 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선정함.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7. 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무주택3자녀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이어야 함.(단,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7. 8 (10:00~12:00) 동탄 롯데캐슬 파티오 타운하우스 분양홍보관. ※ 무주택3자녀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주택3자녀 특별공급 접수시 특별공급 배점 상위 점수에서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상위 점수 미만은 접수를 받지 않음.
- 동·호수 추첨 일시 및 장소 : 2008. 7. 8 (14:00) 동탄 롯데캐슬 파티오 타운하우스 분양홍보관.(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장소 참조)

▣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계		100	기준	점수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참조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 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7. 3) 현재 화성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자(2002.9.5 이후 청약예금가입자는 세대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화성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전산 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13호 규정에 의한 '당첨자'는 아래와 같음.
- '당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 제2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 제2항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마.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서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3)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각각 5점씩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화성시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 7. 9 (수)	–인터넷 국민은행 www.kbstar.com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t2you.com 접수시간 08:30~18:00	□ 일 시 : 2008. 7. 17 (목) □ 장 소 : 분양홍보관 및 홈페이지 (www.lotteapt.net) □ 2008. 7. 17 머니투데이 게재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택형	□ 전용면적 135㎡ 초과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전용면적 135㎡ 초과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 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2주택 이상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주택소유 사실포함] 한 분, 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2002.09.05 이후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2002.09.05 가입자 포함)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2008. 7. 10 (목)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 7. 11 (금)	□ 국민은행 인터넷, 모바일 □ 시간 : 08:30 ~ 18:0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 (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 에서만 가능]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안내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www.apt2you.com] → 청약센터 → 5년간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 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분.[단,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발급) 이용신청을 하신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로 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PI폰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주택청약신청
	모바일 청약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공급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전용면적 \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35㎡ 초과	1,500	1,000	500

▣ 인터넷 청약 안내 [국토해양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인터넷 청약 등의 시행지시" (2006.11.27)에 의함]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기간 및 요건

1) 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면적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2년 경과시마다 면적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면적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중복청약 및 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3자녀 이상)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일반 공급 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중복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나, 먼저 당첨된 주택이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일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만 계약가능
- 일반공급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 불가(신청주택 전체를 무효처리) : 동일 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 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계약)
  - 예비입주자에 대한 당첨자 처리기준 : 잔여물량에 대해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2006.11.27 국토해양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청약 등의 시행 지시)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전입일을 기재. •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방법

- 3자녀 특별공급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민영주택은 일반 공급 대상 주택수의 3%를 3자녀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3자녀 우선공급 신청접수결과 미달된 세대수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1, 2, 3순위 : 층별, 동별, 호별, 형별, 라인별, 군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공급방법별로 청약일정을 구분하여 청약하되, 선순위 미달시에만 차순위 청약 접수함
- 일반공급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화성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를 구분하여 같은 날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청약 순위별로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70%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화성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각각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화성시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거주 지역별로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하며, 1·2순위의 경우 잔여물량을 순차적으로 이월(화성시→수도권→차순위)시 가점제·추첨제 배분비율(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각각 50%)을 적용 하여 이월함.
  -1·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 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 접수함.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특별/지역별 공급세대수

구 분 (단위㎡)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경기도	서울	인천	총계
304.54㎡	1	–	–	1

▣ 공급 신청 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접수자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특별공급 (3자녀이상)	본인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주민등록초본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대리신청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일반공급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민영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1, 2순위자 모두 포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홍보관에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특별공급(3자녀 이상 특별공급 포함) 대상자는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당첨자 중 국토해양부 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 당사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3순위자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납 부 방 법
전 주 택 형	5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급적 1매)로 준비 요망.

▣ 3순위자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 7. 18이후(09:30~16:30)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본인 배우자 신청시 서류 외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인의 인장 및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제3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각 주택형별 당첨자 및 입회인의 입회하에 각 주택형별로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로 발생되는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공 통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 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각 순위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순위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선정방식도 위와 동일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화성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신청자 포함)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수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분양홍보관에 별도 공고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대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인터넷, ARS 당첨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타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 2008. 7. 17 ~ 2008. 7. 26 (10 일간)	· 2008. 7. 17 ~ 2008. 7. 26 (10 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 번호를 누르신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 전화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 1369 (서비스 코드 : 5#)
	이용기간	· 2008. 7. 17 ~ 2008. 7. 26 (10 일간)	· 2008. 7. 17 ~ 2008. 7. 26 (10 일간)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 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 2008. 7. 17 ~ 2008. 7. 26 (10 일간)	
휴대폰문자서비스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08. 7. 17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가 점 제 적 용 기 준

구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가 점 제 적 용 세 부 기 준

일 반 기 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가 점 점 수 산 정 기 준 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점 만점 기준			
※ 비 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③항, 제⑤항, 제⑦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감 점 산 정 기 준

구분	감점항목 기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②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외 가입자 및 세대원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2순위로 청약시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이상 소유자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_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됨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과 처분 후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2008년 7월 22일 (화) ~ 7월 24일(목) (3일간, 시간 10:00 ~ 16:30) - 예비당첨자는 2008년 7월 25일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진행(불참시 당첨권 포기로 간주함)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동탄 롯데캐슬 파티오 타운하우스 분양홍보관.(위치 및 전화번호 참조)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자료 및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자 일방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기재(용도:주택계약 위임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등이 적용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의 대지 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납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65101-01-189908	예금주 : 롯데건설(주)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중도금/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65101-01-189911	예금주 : 롯데건설(주)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분양대금(계약금 포함) 납부는 위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동 지정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한해서만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책임이 있음. • 지정된 중도금·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당첨 효력 상실됨.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예정일 약 1~2개월 전에 사전방문 실시예정

▣ 입주예정일 : 2009년 10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기계실 등

▣ 유의사항

1) 단지 유의사항
- 단지내도로는 구배가 있으며, 보차혼용의 6m 도로로 계획됨 • A, C3, D타입부분의 동측 중앙공원 바닥은 동측으로 1.8%의 구배로 계획됨 • 동측 중앙공원 부분의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량 도로로 계획됨 • 공용 공청안테나는 116동 지붕에 설치됨
- 동측 중앙공원으로 진입하는 램프는 131,134동과 인접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동측 중앙공원으로 진입하는 보행자계단이 130동 후면에 인접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동측 중앙공원으로 진입하는 램프 하부 도로 높이는 2,700mm로 계획됨
- 131,132,133,134동과 인접하여 1층 및 하부에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됨 • 131,132,133,134동 2층 중앙부에는 공용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세대 간의 경계식재가 설치됨 • 129동,130동의 마당부위는 동측 중앙공원에 시각적으로 개방되어있으나, 프라이버시를 위해 2M이상의 담장 설치됨
- 132동 외벽부에 주민공동시설 공용화장실의 배기구가 설치됨 • 경비실 측면 하부에는 스크린조가 설치되며, 경비실 상부로는 스크린배기구가 설치됨 • 램프하부에 쓰레기저장소 및 부대시설용 에어컨 실외기실이 설치됨 • 단지 대지경계선에 따라 2M이하의 옹벽이 설치됨
- 각 타입별 마당 레벨은 상이하게 계획됨 • 단지 동남측 부분의 외부에는 산지를 절토한 법면이 접해있음 • 단지 동남측 부분의 외부에는 탄요유적공원의 산책로와 인접해 있음 • 단지 남서측 부분에는 육교 및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남측 외부에 탄요유적공원 정자가 있으며, 세대마당부분이 일부 노출됨 • 세대 출입은 지하주차장 및 단지내 도로에서 진출입 계획 (101~106동, 107동, 129동,130동,123~128동) • 세대 출입은 단지내 도로에서 진출입 계획 (108~111동,112동,113~117동,118동,119동,120~122동,134동)
- 1층 식당, 거실을 통하여 마당 출입 계획(108~111동,112동,113~117동,118동,119동,120~122동,123~128동,134동) • 1층 마당은 1층 취미실에서 출입 계획(131~133동,134동) • 2층 마당은 2층 거실에서 출입 계획(131~133동,134동) • 101동 주차장 형태는 동일 타입과 상이함
- 1층 침실과 복도를 통하여 마당 출입 계획(101~106동) • 취미실에서의 외부 시선은 법면을 면함(101~106동) • 1층 침실, 복도, 거실을 통하여 마당 출입 계획(107동) • 111동 주차장 정면은 데크정원 하부(천장고=2,500)를 통해 진출입 가능토록 계획(111동)
- 주차장 진입을 위한 지하계단 사용시 외부 단지내 도로와 간섭 발생함(129동,130동) • 지하주차장 형태는 모두 상이함(123~128동) • 세대 출입은 단지내 도로에서 진출입 가능함(131~133동) • 132동,133동은 뒷마당으로 통하는 출입문 설치 • 단지내 일부세대(113동~119동) 아파트 인접함

2)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상에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교통소음에 노출된 도로변 쪽 건물은 교통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됨. • 주택공급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 홍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화성 동탄지구 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설치됨.
- 화성 동탄지구는 일부지역이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 2, 6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이므로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지역임. • 국지도 82호선에서 영덕~양재 간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상의 도로는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학교부지 일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변경 될 수 있음. •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 등)은 한국토지공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취소, 지연될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단독소유하고, 대지 및 부대시설(도로, 주민공동시설 등)은 공유하는 주택임(필지분할은 불가함). • 별도의 관리규약에 의하여 주택이 소재하는 대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대지를 주택의 대지로 하여 단독관리되고 부대시설(도로, 주민공동시설 등)은 공동관리됨.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임.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위반 시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됨. •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화성동탄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이전되므로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분양금액에 에어콘, 식기세척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TR 변압기 설치될 예정임.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화성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동별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마감재리스트에 표시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 3순위 청약 신청분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거래불량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함.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연대보증사 및 분양보증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08-101-0001200	₩ 27,865,345,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의 범위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부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 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등록번호

구 분	회사명	등록번호
시행사	롯데건설(주)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 2003-17
시공사	롯데건설(주)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 2003-17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 고
건축 감리	(주)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	₩ 608,650,301	VAT 별도
전기, 통신, 소방감리	(주)건창이엔씨	₩ 96,500,000	

· 통합 분양홍보관 위치 및 전화번호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91번지 (전화) 031-377-6363 · 분양 홈페이지 : http://www.lotteapt.net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홍보관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및 홍보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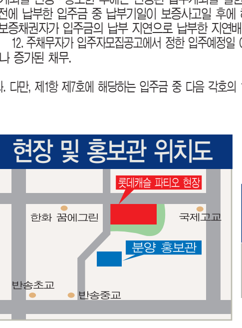

롯데건설

분양문의

031-377-6363

http://www.lotteapt.net